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61
----------	-------

발의연월일 : 2026. 2. 9.

발 의 자 : 허영 · 이해식 · 박용갑
김영환 · 장철민 · 진성준
위성곤 · 소병훈 · 김태선
김영진 · 이재관 · 문진석
박상혁 · 최혁진 의원
(14인)

제안이유

한국투자공사(KIC)가 정부 등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위탁자산의 조기 회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 일정한 규율체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위탁기관에 귀속되는 운용수익의 지급(회수)에 관하여는 ‘협의하여 결정’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대규모 운용수익 지급이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며 운용의 예측가능성과 책임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실제로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재정경제부가 세수 부족분 보전을 목적으로 위탁자산 운용수익을 두 차례에 걸쳐 총 90억 달러 규모로 회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음. 이처럼 정부 재량에 따라 운용수익 회수가 이루어질 경우 국부펀드의 장기투자 원칙과 독립성, 대외 신뢰

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국부펀드는 단기 재정수요에 따라 좌우되기보다 국가자산의 실질가치를 안정적으로 보전·증식하는 장기 운용체계를 전제로 하므로, 운용수익 지급에 관한 법적 통제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큼.

이에 위탁자산 운용수익의 지급 및 조기회수에 관한 사항을 공사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운용수익 지급내역의 대정부 제출 및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며, 위탁자산별 지급 및 조기회수 내역의 대외 공시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운용수익 회수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명확화(안 제9조)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가 위탁자산 운용수익의 지급 및 조기회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운용수익 지급(회수)의 거버넌스를 강화함.

나. 분기별 제출 및 국회 보고 의무 신설(안 제34조)

공사는 운용수익 지급내역을 분기별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 통제와 책임성을 제고함.

다. 위탁자산별 지급·조기회수 내역 공고 의무 신설(안 제36조)

공사가 위탁자산별 운용수익의 지급 및 조기회수 내역을 공고하도

록 하여,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함.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위탁자산 운용수익의 지급 및 조기회수에 관한 사항

제3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사는 위탁자산 운용수익 지급내역(제30조에 따른 조기회수내역을 포함한다)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위탁자산별 운용수익의 지급 및 조기회수내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자산 운용수익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5의2호, 제34조제3항 및 제36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용수익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략)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5. (생략) <u><신설></u> 6. ~ 10. (생략)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위탁자산 운용수익의 지급 및 조기회수에 관한 사항</u> 6. ~ 10. (현행과 같음)
제34조(운용수익의 귀속 및 운용수수료) ① · ② (생략) <u><신설></u>	제34조(운용수익의 귀속 및 운용수수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사는 위탁자산 운용수익 지급내역(제30조에 따른 조기회수내역을 포함한다)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공고) ① (생략) ②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위탁받은 자산에 대한 공사의 자산운용실적 등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정관에서 정하는	제36조(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 4. (생략) <u><신설></u>	-----. 1. ~ 4. (현행과 같음) <u>5. 위탁자산별 운용수익의 지급</u> <u>및 조기회수내역</u>
---	--